#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상해

2. 보험상품의 명칭 : KB개인실손의료비보험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한다.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 다. 가입연령 : 제한없음.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 1) 적용범위 및 효력

- 가)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은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 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 나)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합니다)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다) 회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 체결시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2) 보험료 할인대상 및 영업보험료 할인

가) 회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장종목별 영업보험료의 5% 해당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 이후부터 할인되지 않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종목]

급여형 : 상해급여의료비, 질병급여의료비

비급여형 : 상해비급여의료비, 질병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의료비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청약시,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 7. 기타

- 가. 보험료의 할인 · 할증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 나.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기간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다.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라.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
- 마. 보험 종목의 변경 :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 바.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3) 기타
  -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 사. 실손의료비 관련 사항

- 1) 회사는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실손의료보험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한다.
- 2)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한도
기본형	상해급여실손의료비 보장		5천만원 이내
	질병급여실손의료비 보장		5천만원 이내
특약형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보장		5천만원 이내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보장		5천만원 이내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만원
	실손의료비 보장	주사료	250만원
		자기공명	300만원